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8-03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5누56115 취득세 등 경정청구 기각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1심 판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5. 8. 18. 선고 2014구합2763 판결
변 론 종 결	2016. 6. 1.
판 결 선 고	2016. 6. 29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3. 12. 11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,744,000원, 농어촌특별세 2,360,000원, 지방교육세 944,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8-03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.

2. 결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용[redacted]

판사 [redacted]경[redacted]

판사 [redacted]승[redacted]